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주식회사 위편딩대부 및 주식회사 이지편딩대부(이하 '채권자')와 천 , 이 (이하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출약정계약에 의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된 담보목적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피담보채무 및 담보목적물의 표시)

항목	내용
피담보채권 금액	금 이십오억 원 (₩ 2,500,000,000)
채권최고액 금액	금 삼십칠억오천만원 (₩ 3,750,000,000)
상환기일	첫 대출 실행일로부터 [14]개월
이자율	연 14%
연체이자율	연 17%
담보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0-2, 220-3, 220-15 번지 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 사업권 일체

제 2 조 (담보권의 설정)

- ①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제 1 조의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 ②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권 금액의 150%로 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 ③ 상기 근저당권은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3 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 ① 위 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특별이자,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등에 미친다.
- ② 위 담보목적물이 분할·병합·증액·감액·변경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제 4 조(위험부담·면책조항)

제반증서상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 5 조(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